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0년 9월 6일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9월 7일

3. 제안이유

은닉재산 신고시 신고서를 제출토록 한 의무사항을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일부 용어 정비

4. 주요골자

가. 은닉재산 신고의무 폐지

○ 신고의무 사항 지방재정법과 중복

○ 신고의무 사항 폐지로 주민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

나. 일부 관용어를 규정에 맞게 정비

○ "사용허가코자"를 "사용허가하고자"로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은닉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이외의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,

○ 일부 관용어를 정리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※ 붙 임 :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